

이문치장학금 지급 내규

2017. 3. 20 제정
2019. 3. 1 일부개정
2023. 9. 1 일부개정
2025. 4. 1 일부개정
<공과대학행정팀>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의 발전을 위하여 기탁된 이문치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5. 4. 1.>

제 2 조 (선발기준)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. 단,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5. 4. 1.>

1. 인성이 훌륭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
2. 본교 공과대학 소속 5학기 이상(4학기 이상 수료 학생) 재학 중인 자(단, 건축학과는 7학기 이상)
3.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
4.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(4학년은 12학점, 건축학과 5학년은 12학점) 이상이고
평균평점 3.3 이상인 자

제 3 조 (장학금 신청) 이문치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 장학금 공지를 통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 장학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문치장학금 신청서 1부.
2. 자기소개서(향후 계획 포함) 1부.
3. 지도교수 추천서 1부.
4.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1부. <개정 2025. 4. 1.>
5. 성적 증명서 1부.
6. <삭제 2025. 4. 1.>
7. .<삭제 2025. 4. 1.>

제 4 조 (장학생 선발) 장학생은 공과대학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장학금액 및 기간)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매학기 수업료 전액(수업료 범위 내에서 수혜하는 타 장학금이 있을 경우, 그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) 및 매학기 생활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수업연한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5. 4. 1.>

제 6 조 (장학금 지급 시기) 장학증서 수여와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초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.

1. 본 장학기금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자
2. 직전학기 평점평균 3.3 미만인 자
3.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미만인 자
(4학년은 12학점 미만인자, 건축학과 5학년은 12학점 미만인자)

제 8 조 (장학기금 및 장학생 관리방법) 장학기금 및 장학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장학기금은 본교 재정팀에서 관리한다.<개정 2025. 4. 1.>
2. 매 학년도 기금의 사용 내역 및 장학생에 관한 내역을 기부자가 생존 시에는 기부자에게, 기부자가 사망 시에는 기부자 가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. 장학금 지급은 이자를 포함하여 장학기금 원금을 재원으로 한다.(원금소진형 장학기금)
4. <삭제 2025. 4. 1.>

제 9 조 (보칙) 본 내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자와 본교가 협의 결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 (제3조 3항 이하 및 제5조, 제8조 제4항 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 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조 내지 제3조, 제5조, 제8조 개정)